[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이 사 업 명 : 노후 보안관제시스템 현행화 사업

ㅇ 발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위즈코리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개인정보접속기록 통합 소명관리 솔루션 1식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조달구매)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4

발주기관 : 공정거래위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위즈코리



규 격 서(시방서)

2024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ㅇ 프로젝트명 : 노후 보안관제시스템 현행화 사업

ㅇ 금 액:조달구매

ㅇ 목 적 : 개인정보 자기 및 통합 소명 관리 솔루션을 적용하여 개인

정보보호 강화

• 특정제품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 도입된 기존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과 호환을 위해 Weeds Board V3.0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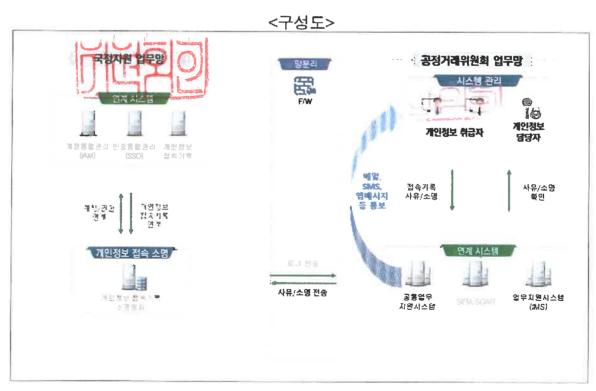
ㅇ 대상시스템 **

- 보안관제시스템

· WEEDS Board V3.0

ㅇ 도입시기 : 협의 후 결정

0 기술지원내용



- 로그 취합 및 관리, 분석은 업무망에 구현
- 망간 연계는 망연계 방식을 준수하여야 함

- 연계 원칙은 단방향 통신, 파일전송 방식임
- IAM과 연계하여 사용자 및 권한 관리되어야 함
- 모든 로그 및 분석자료는 SOAR에 제공하여야 함
- SOAR에서 정책(롤, 기능 등)배포를 연계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접속에 따른 비정상 행위 및 다운로드 행위 탐지 시 해당 사유에 대해 처리하고 이력하는 기능 제공
- 발생된 소명 대상 건 별 해당 취급자에 소명 요청 발송 및 각종 증빙 관리 기능 제공
- 판정자 별 판정 대상 소명 요청 정보 제공
- 소명 및 판정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메신저, SMS, 이메일 등 다양한 알림 매체와 연계 기능 제공
- 유관 시스템과 연계/연동 기능 제공



